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70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이정문 · 이학영 · 이연희
민형배 · 채현일 · 서영석
조승래 · 이재관 · 박홍배
황명선 · 복기왕 · 박 정
정준호 · 김동아 의원
(14인)

제안이유

공공정책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집단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함)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함(안 제6조).
- 다.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집단민원 대표자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 마.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바. 조정신청의 내용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거나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조정인은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성립한 조정에 대해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안 제26조).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민원의 조정(調停)에 관한 요건·절차·효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집단민원 대표자와 해당 행정기관등
 - 나. 제17조에 따라 조정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의 대표자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등의 책무) 집단민원과 관련된 행정기관등은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정인

제6조(조정인) ① 집단민원의 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인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분야에서 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특정 분야의 조정사안에 대하여 조정인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조정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조정인은 위원회 위원의 직위에 있는 동안, 제2항제2호라목의 조정인은 해당 조정사안의 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조정인의 지위를 가진다.

④ 그 밖에 조정인의 임명 ·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정인의 업무) ① 조정인은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의 주재
2.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3. 조정안의 작성
4.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조정인은 제1항의 업무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9조(신분보장) 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조정인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조정인의 제척 등) ① 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조정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에 해당되거나 그 민원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인이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조정인이 해당 집단민원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조정인이 해당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정인이 해당 집단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 ② 조정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조정인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④ 조정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집단민원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⑥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집단민원의 조정신청 등

제11조(조정신청의 요건) ①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100인 이상일 것. 다만,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 법에 따른 조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이 있는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조정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집단민원 대표자) ①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해당 민원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이하 “집단민원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단민원의 대표자를 3명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라 집단민원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단민원 대표자는 해당 집단민원의 다른 민원인을 위하여 해당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집단민원의 취하는 해당 집단민원의 다른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은 집단민원 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집단민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단민원 대표자는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조정신청) ① 집단민원 대표자는 위원회에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집단민원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집단민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집단민원의 상대방인 행정기관등
3. 집단민원의 내용
4. 집단민원의 민원인 연명부(주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5. 조정신청의 취지

③ 행정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기된 민원이 집단민원인 경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따라 신청·접수된 고충민원이 해당 행정기관등을 상대로 하는 집단민원인 경우

④ 행정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집단민원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집단민원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집단민원의 민원인 연명부(주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집단민원의 내용

4. 조정신청의 취지

5.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의 결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제14조(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제15조(조정신청 사실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이나 집단민원의 대표자(집단민원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민원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이나 집단민원의 대표자는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집단민원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제2항의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에 불응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통지의 내용을 조정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대리인) ① 집단민원 대표자나 행정기관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 참가) ① 조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집단민원의 이해관계인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이미 조정에 참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이

법에 따라 조정을 거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가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써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실태조사에 따른 조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집단민원의 민원인 또는 행정기관등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지 방문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신청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친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8. 이미 이 법의 따른 조정을 거친 집단민원이거나 이와 신청취지가 동일한 사항
9. 그 밖에 조정신청의 내용이 이 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민원을 이송하거나, 조정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함께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집단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집단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조정절차의 진행

제21조(조정인의 지정) ①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정신청(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으면 그 집단민원의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집단민원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인을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조정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을 조정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정장이 조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행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인이 지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조정회의 등) ① 조정인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조정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인은 조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 이해관계인 ·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조정회의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회의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정을 위한 조사) ① 조정인은 집단민원의 내용,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 등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정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
3. 당사자 · 이해관계인 · 관계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4. 조사사항과 관련된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5. 감정의 의뢰

6. 관계 전문가에 대한 자문

7. 조정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③ 제2항에 따라 진술을 듣거나, 열람·복사를 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당사자·이해관계인·관계 전문가 등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구·실지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 ① 조정인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업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관계 행정기관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조정의 성립 및 효력

제26조(조정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조정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27조(조정 종결) ① 조정인은 해당 집단민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인은 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가 14일 이내 조정안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 결과의 이행 등) ①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정내용의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 ·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 ① 위원회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당 행정기관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집단민원의 예방을 위한 조치의 권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연구 등) ① 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집단민원 조정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3. 집단민원의 조정기법 및 이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1조(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정보의 보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집단민원의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조정인, 당사자, 위원회 및 행정기관등의 임직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는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조정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행정기관등
2.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4.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정인으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5.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